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24-117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9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양육지원금 지급을 통해 장애인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지원대상, 지원금액, 지원기간, 지원절차(안 제3조~제6조)

다. 환수조치(안 제7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(장애인 가족 지원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: 2024. 8. 29. ~ 9. 18.(제출의견 없음)

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원안 동의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양육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인가정”이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「장애인복지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자녀인 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.
2. “양육지원금”이란 장애인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 대상) ① 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2세 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제6조에 따른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인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인 장애인이 사망, 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를 지원 대상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그 친권자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.

③ 양육지원금은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.

제4조(지원금액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지원한다.

제5조(지원기간) 양육지원금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매월 지원한다. 다만, 전입자의 경우 제3조제1항의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한다.

제6조(지원절차) ① 양육지원금 신청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별지 서식의 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(이하 “신청서”라 한다) 및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의 장(이하 “동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관할 동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매월 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자 계좌에 양육지원금을 입금한다.

제7조(지원중단 및 환수 등)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대상이 양육하는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양육지원금의 지원을 중지한다.

1.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이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
2. 지원 대상인 장애인가정이 타 시군구로 진출한 경우

3. 해외체류 기간이 연속 1년 이상인 경우

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을 정지하고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안 제4조제1항

제4조(지원금액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아동 1명 당 월 1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지원한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동행국 장애인사회보장과 강나은
연 락 처	02-3153-8873